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7 선고 2020가합4111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1. 4. 2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4.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정용신, 판사 고지은, 판사 이창환

별지 1

사해행위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아파트 E동 제13층 F호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아파트 E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F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133.29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대 116642.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16642.4분의 78.307

별지 2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원고는 소외 B(이하 '채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A은 채납자의 모친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채납자의父인 망 H은 2018. 4. 30. 사망하였고, 망 H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인 I, B으로 채납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이었습니다(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3호증 제적등본 참조).

한편, 망 H의 상속재산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과 같습니다.

2. 소외 B의 채납내역 및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가. 소외 B의 부과 경위 및 채납내역

소외 B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J에서 ㈜K 및 ㈜L이라는 상호로 판촉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자로 2015년 귀속 인정상여소득 417,618,613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1건 162,042,380원을 2019. 10. 2.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외에 양도소득세 3건 및 증권거래세 1건 등 국세를 무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금 284,315,680원의 국세가 채납되어 있습니다(<표1> 참조).

<표1> 현재 소외 B의 국세채납내역

(단위 : 원)

세목	귀속	최초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세액	채납액	판할
증권거래세	2011	2016. 12. 31.	2011. 11. 28.	2,420,590	3,560,420	천안
양도소득세	2011	2014. 11. 30.	2011. 11. 30.	39,379,050	62,910,730	용인
양도소득세	2016	2017. 11. 30.	2016. 4. 30.	258,160	265,900	천안
양도소득세	2016	2018. 1. 15.	2016. 1. 31.	28,113,510	37,306,570	천안
종합소득세	2015	2019. 10. 31	2015. 12. 31.	162,042,380	180,272,060	천안
합 계				232,213,690	284,315,680	

(갑 제4호증 체납내역조회 참조)

나. 피보전채권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 21조 제2항 제7호 및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증권거래세의 경우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체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3건 및 증권거래세 1건은 사해행위일인 2018. 4. 30. 이전에 모두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소의 B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고지일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8. 4. 30.) 이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호)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조세채무자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호)

본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 보건대 이 사건 인정상여자료에 의한 종합소득세는, 체납자 B이 대표자인 ㈜K(2015. 5. 15. 자진폐업) 및 ㈜L(2015. 5. 15. 자진폐업)이 2015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마포세무서장은 법인세 결정(2019. 2. 8. 법인세 고지)을 통하여 미회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 B에게 417,618,613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B의 해당 인정상여 소득에 대해 천안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2019. 8. 23. 체납자 주소지로 발송하였고(2018. 12. 27. 수령), 2019. 10. 2.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2019. 10. 4. 수령)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폐업일(2015. 5. 15.)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종합소득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결정을 통해 밝혀진 미회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에 따라 소득처분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19. 10. 31. 납기로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갑 제5호증 과세예고 통지서, 갑 제6호증 과세예고 통지서 송달내역, 갑 제7호증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참조)

3. 사례행위 및 채무초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례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체납자 B은 2018. 4. 30.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

속지분(7분의 2)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 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즉, 이 사건 법률행위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8. 4. 30. 당시 채납자 B의 적극재산은 311,428,571원이었고 소극재산은 254,668,090원으로 순자산이 56,760,481원이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채납자 B은 무자력 상태가 된 것입니다(갑 제9호증 상속세 신고서, 갑 제10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참조).

B의 채무초과 검토표

구분	종류	내역	평가액* (단위 : 원)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상속재산 중 채납자지분(2/7)	311,428,571	상속재산가액의 1/7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양도소득세)	254,668,090	2018.4.30. 기준
		소계	254,668,090	
순자산			56,760,481	
사해행위	부동산	상속재산중 채납자지분(2/7)	311,428,571	
채무초과			△ 254,668,090	

* 평가액 : 별지 3 「이 사건 부동산 평가내역」 참조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채납자 B이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는 B의 모친으로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위와 같이 소외 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20. 7. 29.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2018.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별지 3

이 사건 부동산 평가내역

종류	물건지	면적	상속재산가액 -근저당채무	상속 지분	채납자지분
집합 건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아파트 E동 제13층 F호	133.295	1,090,000,000 - 329,946,964	2/7	217,158,010